

# 광양센트럴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으로 청약신청 자격을 위반하여 청약 후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문에 등재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청약홈에서 최초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0000636)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21.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5. 28. 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선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1.)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안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광양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우선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900% 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일 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연적은 “전용연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당첨시 1회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됨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 후 재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계약금(20%) 납부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10월 27일(목)	10월 28일(금)	11월 2일(수)	11월 7일(월) ~ 11월 9일(수)	11월 10일(목) ~ 11월 11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제출서류 지참하여 아래 주소로 방문	계약서류 지참하여 아래 주소로 방문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62, 이편한세상 광양 상가 109호	

※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시어 청약신청 당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창구, 기본주택 접수 불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건축과 - 41701호(2022.10.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수동로 21일원 (광양센트럴자이 아파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2층 9개동 총 704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5세대

[특별공급 3세대(신혼부부 2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 입주시기 : 잔금납부 시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 최초 입주시기 2022년 08월 29일)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인영 주택	2022930016	01	074.9916A	74A	74.9916	24.3930	99.3846	50.1246	149.5092	45.3201	2				2
		02	074.9700B	74B	74.9700	25.1357	100.1057	50.1102	150.2159	45.3070	5				5
		03	084.9986A	84A	84.9986	27.1487	112.1473	56.8133	168.9606	51.3677	9	1		1	8
		04	084.9957B	84B	84.9957	27.1299	112.1256	56.8114	168.9370	51.3659	6	1	1	2	4
		05	084.9871C	84C	84.9871	27.4467	112.4338	56.8057	169.2395	51.3607	2				2
		06	084.9846D	84D	84.9846	28.1089	113.0935	56.8040	169.8975	51.3592	1				1
합 계											25	2	1	3	2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	타입 (약식표기)	동호수	총 공급금액						
				아파트 분양가 (A)			부대경비(B)	계 (C=A+B)	계약금(20%) 계약 시	잔금(80%) 별도 안내
				대지비	건축비	소계				
1	074.9916A	74A	101-1101	40,387,784	256,912,216	297,300,000	9,910,000	307,210,000	61,442,000	245,768,000
2			101-2002	40,387,784	256,912,216	297,300,000	9,910,000	307,210,000	61,442,000	245,768,000
3	074.9700B	74B	103-2103	40,376,109	248,623,891	289,000,000	9,910,000	298,910,000	59,782,000	239,128,000
4			104-1303	40,376,109	248,623,891	289,000,000	9,910,000	298,910,000	59,782,000	239,128,000
5			104-1503	40,376,109	248,623,891	289,000,000	9,910,000	298,910,000	59,782,000	239,128,000
6			109-0103	40,376,109	222,923,891	263,300,000	9,910,000	273,210,000	54,642,000	218,568,000
7			109-1003	40,376,109	248,623,891	289,000,000	9,910,000	298,910,000	59,782,000	239,128,000
8	084.9986A	84A	102-0503	45,777,206	279,822,794	325,600,000	12,210,000	337,810,000	67,562,000	270,248,000
9			103-0304	45,777,206	274,522,794	320,300,000	12,210,000	332,510,000	66,502,000	266,008,000
10			103-0702	45,777,206	279,822,794	325,600,000	12,210,000	337,810,000	67,562,000	270,248,000
11			103-1602	45,777,206	284,722,794	330,500,000	12,210,000	342,710,000	68,542,000	274,168,000
12			104-0702	45,777,206	279,822,794	325,600,000	12,210,000	337,810,000	67,562,000	270,248,000
13			104-1304	45,777,206	291,222,794	337,000,000	12,210,000	349,210,000	69,842,000	279,368,000
14			104-1604	45,777,206	291,222,794	337,000,000	12,210,000	349,210,000	69,842,000	279,368,000
15			108-0403	45,777,206	274,922,794	320,700,000	12,210,000	332,910,000	66,582,000	266,328,000
16			108-0703	45,777,206	279,822,794	325,600,000	12,210,000	337,810,000	67,562,000	270,248,000
17	084.9957B	84B	102-0501	45,775,602	284,524,398	330,300,000	12,210,000	342,510,000	68,502,000	274,008,000
18			102-1601	45,775,602	289,524,398	335,300,000	12,210,000	347,510,000	69,502,000	278,008,000
19			105-2101	45,775,602	289,524,398	335,300,000	12,210,000	347,510,000	69,502,000	278,008,000
20			107-0301	45,775,602	272,924,398	318,700,000	12,210,000	330,910,000	66,182,000	264,728,000
21			107-1601	45,775,602	289,524,398	335,300,000	12,210,000	347,510,000	69,502,000	278,008,000
22			108-0101	45,775,602	259,624,398	305,400,000	12,210,000	317,610,000	63,522,000	254,088,000
23	084.9871C	84C	101-1803	45,770,968	283,929,032	329,700,000	12,210,000	341,910,000	68,382,000	273,528,000
24			102-1002	45,770,968	283,929,032	329,700,000	12,210,000	341,910,000	68,382,000	273,528,000
25	084.9846D	84D	109-0801	45,769,631	277,630,369	323,400,000	12,210,000	335,610,000	67,122,000	268,488,000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은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세금, 이자, 관리비, 판매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무상, 유상옵션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거부 시 계약 불가)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계약에 수반되는 인지세는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입주가 개시되었으며, 금회 재공급 세대 잔금납부일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으로 계약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계약 전 현장방문 등으로 주변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청약자 자격검증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더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인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li> <li>-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청약 가능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 10. 2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이하	~8,692,508원	~10,081,133원	~10,256,501원	~10,891,755원	~11,527,009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3)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외국인은 청약 신청 불가)

1.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2.10.27(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일반공급		2022.10.28(금)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각 유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9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0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li>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900%까지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li> </ul>

	<p>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b>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b></li> </ul>
--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2.11.02.(수)</li> <li>• 확인방법</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2022.11.10.(목)~2022.11.11.(금) (10:00~16:00)</li> <li>• 장소</li> <li>-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62, 이편한세상 광양 상가 109호</li> </ul>
	일반공급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gycentral-xi.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숲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1.02. ~ 2022.11.11.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li>※ <b>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b></li> </ul>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1.02. /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만 인정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함(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소 변동 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소 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공고일 현재)
	○	소명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자격 검증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청한 서류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기본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분양사무실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비사업자의 경우 (분양사무실에 비치)	
노부모 부양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공고일 현재)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해당서류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만 인정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계약장소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본인만 가능, 대리인 계약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추가 개별통지 서류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필수(계약 장소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반드시 본인 발급분(예약 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농협	301-0272-5194-51	우리자산신탁(주)
발코니 분양대금 계좌	농협	301-0272-5203-61	우리자산신탁(주)
별도품목 구매대금 계좌	국민	006037-04-005748	지에스건설(주)
유상옵션(가전)	신한	100-030-466930	자이에스앤디(주)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세대별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계약금 및 잔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분양사무소 현금수납 불가)
- \* 지정된 분양대금(잔금)은 납부 지정일자내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통.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분양대금 대출 알선은 없으며, 모든 분양대금은 자납하여야 합니다.

###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 공급방법

-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이나 부적격자 발생 시 미계약 발생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에게만 유선 및 문자로 통보예정입니다.
- \* 예비입주자 서류검수를 통보 받은 경우 예비 당첨자 검수일(별도 통보)에 서류 제출하여 검수 받아야 하며 서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는 900% 선발하므로 서류검수 요청은 미달된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선순위 일부에게 통보하며, 선순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서류검수 및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자는 최초 계약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원인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미납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미납기간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최대 3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수입인지 구입 후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I

**발코니 확장 및 별도품목(유상), 유상옵션(가전), 무상옵션 품목**

■ 발코니 확장(안방발코니 제외) 및 별도품목(유상), 유상옵션(가전)은 아파트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무상옵션을 포함하여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별 현황, 공급금액, 납부일정 [ 납부계좌 : 농협 301-0272-5203-61 ,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주) ]

구분	타입 (약식표기)	동호수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시(20%)	잔금(80%)
1	74A	101-1101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침실4	11,400,000	2,280,000	9,120,000
2	74A	101-2002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침실4	11,400,000	2,280,000	9,120,000
3	74B	103-2103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	10,500,000	2,100,000	8,400,000
4	74B	104-1303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	10,500,000	2,100,000	8,400,000
5	74B	104-1503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	10,500,000	2,100,000	8,400,000
6	74B	109-0103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	10,500,000	2,100,000	8,400,000
7	74B	109-1003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	10,500,000	2,100,000	8,400,000
8	84A	102-0503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침실4	12,500,000	2,500,000	10,000,000
9	84A	103-0304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침실4	12,500,000	2,500,000	10,000,000
10	84A	103-0702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침실4	12,500,000	2,500,000	10,000,000
11	84A	103-1602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침실4	12,500,000	2,500,000	10,000,000
12	84A	104-0702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침실4	12,500,000	2,500,000	10,000,000
13	84A	104-1304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침실4	12,500,000	2,500,000	10,000,000
14	84A	104-1604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침실4	12,500,000	2,500,000	10,000,000
15	84A	108-0403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2+침실4	12,500,000	2,500,000	10,000,000
16	84A	108-0703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침실4	12,500,000	2,500,000	10,000,000
17	84B	102-0501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_침실2+침실3	12,300,000	2,460,000	9,840,000
18	84B	102-1601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	12,300,000	2,460,000	9,840,000
19	84B	105-2101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	12,300,000	2,460,000	9,840,000
20	84B	107-0301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	12,300,000	2,460,000	9,840,000
21	84B	107-1601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	12,300,000	2,460,000	9,840,000
22	84B	108-0101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	12,300,000	2,460,000	9,840,000
23	84C	101-1803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	12,600,000	2,520,000	10,080,000
24	84C	102-1002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	12,600,000	2,520,000	10,080,000
25	84D	109-0801	거실/주방+침실1_드레스룸+침실2+침실3+알파룸	13,200,000	2,640,000	10,560,000

■ [별도품목] (플러스옵션 및 무상옵션) 세대별 현황, 공급금액, 납부일정 [ 납부계좌 : 국민 006037-04-005748 , 예금주 : 지에스건설(주) ]

구분	타입 (약식표기)	동호수	설치부위								공급금액	계약시(20%)	잔금(80%)
			현관중문	포셀린타일	조명 및 벽체특화	공간옵션							
						선택1	선택2	베타룸	팬트리	알파룸			
1	74A	101-1101	-	-	-	-	○	-	-	-	2,100,000	420,000	1,680,000
2	74A	101-2002	○	○	-	-	○	-	-	-	4,460,000	892,000	3,568,000
3	74B	103-2103	-	-	-	-	-	-	-	-	0	0	0
4	74B	104-1303	-	-	-	-	-	-	-	-	0	0	0
5	74B	104-1503	○	○	○	-	-	-	-	-	3,760,000	752,000	3,008,000
6	74B	109-0103	-	-	-	-	-	-	-	-	0	0	0
7	74B	109-1003	○	○	○	-	-	-	-	-	3,760,000	752,000	3,008,000
8	84A	102-0503	-	-	-	-	○	-	-	-	2,400,000	480,000	1,920,000
9	84A	103-0304	-	○	○	-	○	-	-	-	4,600,000	920,000	3,680,000
10	84A	103-0702	-	○	○	-	○	-	-	-	4,600,000	920,000	3,680,000
11	84A	103-1602	-	○	○	-	○	-	-	-	4,600,000	920,000	3,680,000
12	84A	104-0702	-	-	-	-	○	-	-	-	2,400,000	480,000	1,920,000
13	84A	104-1304	-	-	-	○	-	-	-	-	2,200,000	440,000	1,760,000
14	84A	104-1604	-	-	-	-	-	-	-	-	0	0	0
15	84A	108-0403	-	-	-	○	-	-	-	-	2,200,000	440,000	1,760,000
16	84A	108-0703	-	-	-	-	○	-	-	-	2,400,000	480,000	1,920,000
17	84B	102-0501	-	-	○	-	-	○	-	-	2,600,000	520,000	2,080,000
18	84B	102-1601	-	○	-	-	-	○	-	-	2,020,000	404,000	1,616,000
19	84B	105-2101	-	○	-	-	-	○	-	-	2,020,000	404,000	1,616,000
20	84B	107-0301	-	-	-	-	-	-	-	-	0	0	0
21	84B	107-1601	○	○	○	-	-	○	-	-	3,980,000	796,000	3,184,000
22	84B	108-0101	○	-	-	-	-	○	-	-	1,760,000	352,000	1,408,000
23	84C	101-1803	○	○	○	-	-	-	○	-	4,870,000	974,000	3,896,000
24	84C	102-1002	-	-	-	-	-	-	○	-	900,000	180,000	720,000
25	84D	109-0801	○	-	-	-	-	-	-	○	1,760,000	352,000	1,408,000

■ 유상옵션(가전) 세대별 현황 [ 납부계좌 : 신한 100-030-466930 , 예금주 : 자이에스앤디(주) ]

구분	타입 (약식표기)	동호수	유상옵션(가전) 계약품목							공급금액	계약시(20%)	잔금(80%)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김치냉장고	룩탑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필름			
1	74A	101-1101	4대	-	-	-	-	-	-	6,520,000	1,304,000	5,216,000
2	74A	101-2002	4대	-	-	CIR-S3216FLBE	-	-	-	7,010,000	1,402,000	5,608,000
3	74B	103-2103	-	-	-	-	-	-	-	-	-	-
4	74B	104-1303	-	-	-	-	-	-	-	-	-	-
5	74B	104-1503	4대	-	-	CIR-S3216FLBE	-	DUB22SB	-	8,220,000	1,644,000	6,576,000
6	74B	109-0103	4대	-	-	-	-	-	-	6,520,000	1,304,000	5,216,000
7	74B	109-1003	4대	1대	-	CIR-S3216FLBE	MZ385EBTD	-	-	8,565,000	1,713,000	6,852,000
8	84A	102-0503	4대	-	-	-	-	-	-	6,600,000	1,320,000	5,280,000
9	84A	103-0304	4대	-	-	-	-	-	-	6,600,000	1,320,000	5,280,000
10	84A	103-0702	4대	-	-	-	-	-	-	6,600,000	1,320,000	5,280,000
11	84A	103-1602	4대	1대	-	-	-	DUB22SB	-	8,755,000	1,751,000	7,004,000
12	84A	104-0702	4대	-	-	-	-	-	-	6,600,000	1,320,000	5,280,000
13	84A	104-1304	4대	-	-	CIR-S3216FLBE	-	-	-	7,090,000	1,418,000	5,672,000
14	84A	104-1604	-	-	-	-	-	-	-	-	-	-
15	84A	108-0403	4대	-	-	-	-	-	-	6,600,000	1,320,000	5,280,000
16	84A	108-0703	4대	-	-	-	-	-	-	6,600,000	1,320,000	5,280,000
17	84B	102-0501	2대	-	K221PR14B	-	MZ385EBTD	DUB22SB	-	7,200,000	1,440,000	5,760,000
18	84B	102-1601	-	-	-	-	-	-	-	-	-	-
19	84B	105-2101	4대	1대	-	CIR-S3216FLBE	-	-	-	8,045,000	1,609,000	6,436,000
20	84B	107-0301	-	-	-	-	-	-	-	-	-	-
21	84B	107-1601	4대	-	-	-	-	-	-	6,600,000	1,320,000	5,280,000
22	84B	108-0101	4대	1대	-	-	-	-	C50	9,135,000	1,827,000	7,308,000
23	84C	101-1803	4대	-	-	CIR-S3216FLBE	-	-	C50	8,440,000	1,688,000	6,752,000
24	84C	102-1002	4대	-	-	CIR-S3216FLBE	-	-	-	7,090,000	1,418,000	5,672,000
25	84D	109-0801	4대	-	-	CIR-S3216FLBE	MZ385EBTD	-	-	7,680,000	1,536,000	6,144,000

■ 품목별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

- \* 품목별 계약금 및 잔금은 상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분양사무소 현금수납불가)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지정된 품목별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품목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품목별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Ⅶ

기타

■ 신탁사 및 시공사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공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200111-0188156
신탁사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2층	110111-2003236
위탁자	예성디앤피 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108, 3층	141211-0077317

■ 관리형토지신탁

- 본 사업은 시행사인 예성디앤피(주)가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에 시행권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예성디앤피(주)이며, 우리자산신탁(주)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하고 아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사인 예성디앤피(주), 시행수탁사인 우리자산신탁(주),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분양금액 및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는 우리자산신탁(주)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포함)로만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시행위탁사,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금액 및 공급금액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시공상 하자 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지에스건설(주)이 부담하며, 계약자는 우리자산신탁(주)에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시점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시행수탁사인 우리자산신탁(주)가 분양계약상의 매도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시행위탁사 겸 수익자인 예성디앤피(주)에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금액 및 공급금액의 반환, 입주자연시 지체상금, 소유권이전 등)는 시행위탁사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예성디앤피(주)가 부담하고 계약자는 사업주체인 우리자산신탁(주)에 대하여 분양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우리자산신탁(주)는 중도금대출 앞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계약자의 분양금액 및 공급금액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외장 자재의 수급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주택법 등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분양금액 및 공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우리자산신탁(주)의 의무가 아니며, 시행위탁사인 예성디앤피(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합니다.